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000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79호, 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용도분류 체계에 맞춰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2023. 2. 23. 발표) 후속조치로서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도심 내 택배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IT 기반 소규모 물류시설 등 새로운 공간 수요, 소비자의 빠른 배송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

3.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일반적으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에 주문배송시설의 경우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주문배송시설에 대한 관리를 의무화함.

나. 주문배송시설 용도 신설(령 별표 1 제4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는 주문배송시설 용도를 신설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 8. ~ 1. 18.)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표 제4호가목·사목·카목·과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을 "같은 표 제4호가목·사목·카목·과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머목"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는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생략)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라목, <u>같은 표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u>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 ----- ----- ----- ----- -- <u>같은 표 제4호가목·사목·카목·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만 해당한다)·더목·러목·머목,</u> ----- ----- ----- ----- -----.

[참고]

「별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신설 >	< 생략 > 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는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60